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8. 9 선고 2015가단10419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5. 24.

판결 선고 2016. 8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포천시 C 대 195m² 지상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, 8, 9, 5, 6, 7,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ㄴ"부분 4m² 및 같은 감정도 표시 "ㄴ"부분 처마를 각 철거하고, 위 "ㄴ"부분을 인도하고,
나. 86,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3. 17.부터 2016. 8. 9.까지는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15. 7. 14.부터 위 가.항 기재 "ㄴ"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,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3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, 다.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85,0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

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판사신윤주

별지